**○ 추진 경과**

**1) 초음파급여화대비TFT 활동보고**

1. 총 6회(4~9차) 총괄협의체회의 참석, 총 7회 복지부-심평원-학회 연석회의 참석, 총 16회 초음파급여화TFT 회의, 총 2회 의협 상대가치연구단회의 참석
2. 기준초음파 설정 (산과: 제1삼분기 정밀1 (NT), 부인과: 일반초음파) 및 의사행위량 산출
3. 진단초음파 분류 및 상하 레벨 설정, 유도초음파 목록 및 레벨 설정
4. 진단초음파, 유도초음파 행위정의 (산과: 33개, 부인과: 20개)
5. 산부인과 외래 초음파 수가 (관행수가) 및 수입 비중표 조사
6. 산모 대상 산전초음파 횟수 및 요구도 조사 (2016년 4월 22일 보도자료 배포)
7. 산부인과 의사 대상 산전초음파 횟수 및 필요도 조사
8. 임신 주수 별 초음파 시행 의학적 근거 국제 가이드라인 검토
9. 임신부 산전 초음파 급여 횟수 및 수가 협상
10. 제한횟수 초과 급여산정 조건, 고위험 가산 기준, 정밀2 초음파 기준 등 논의

**○ 임산부 급여 초음파 분류 및 수가** (고시 제 2016-149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류번호** | **코드(EDI)** | **명칭** | **점수(점)**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 |
| **나-951** |  | **임산부** |  |  |  |  |  |
|  |  | **가. 제1삼분기 First Trimester** |  |  |  |  |  |
|  | EB511 | (1) 일반 General | 678.69 | 59,789 | 57,828  | 60,238  | 62,647 |
|  | EB512 | 주: 임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460.55점을 산정한다. | 460.55 | 40,572 | 39,240  | 40,875  | 42,510 |
|  | EB513 | (2) 정밀 Detailed | 1,211.10 | 106,686 | 103,188  | 107,488  | 111,787 |
|  | EB514 | 주: 기형아(Anomaly)를 정밀 계측한 경우 1,553.20점을 산정한다. | 1,553.20 | 136,827 | 132,336  | 137,850  | 143,364 |
|  |  | **나. 제2, 3삼분기 Second, Third Trimester** |  |  | 　 | 　 |  |
|  | EB515 | (1) 일반 General | 960.72 | 84,629 | 81,852  | 85,263  | 88,673 |
|  | EB516 | 주: 고위험 임신의 경우 1248.93 점을 산정한다. | 1,248.93 | 110,021 | 106,404  | 110,838  | 115,271 |
|  | EB517 | (2) 정밀 Detailed | 2,058.94 | 181,367 | 175,416  | 182,725  | 190,034 |
|  | EB518 | 주: 기형아(Anomaly)를 정밀 계측한 경우 2,412.06점을 산정한다. | 2,412.06 | 212,474 | 205,512  | 214,075  | 222,638 |
| **나-943** |  | **심장** |  |  |  |  |  |
|  | EB436 | **태아정밀 심초음파 (Detailed Fetal Echocardiography)** | 3,241.07 | 285,511  | 276,144  | 287,650  | 299,156 |

**○ 임신부 초음파 횟수**

**1) 정상 임신부:** 임신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임신주수 별 총 7회 급여인정. 횟수 초과 시 비급여. (복지부 Q&A 1번)

|  |  |  |  |
| --- | --- | --- | --- |
| **시행 주수** | **진단 초음파 종류** | **횟수** | **확인 사항** |
| **임신 13주** 이하 | 임신 제1삼분기 일반 | 2 | 임신 여부 및 자궁 및 부속기의 종합적인 확인을 하는 경우 산정\*주: 임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460.55점 산정  |
| **임신 11-13주** | 임신 제 1삼분기 정밀 | 1 | 태아 목덜미 투명대 확인, 임신 1삼분기 진단 가능한 기형 진단 |
| **임신 14-19주** | 임신 제 2,3삼분기 일반 | 1 | 태아 안녕, 양수량 확인, 태아 성장 평가 |
| **임신 16주 이후** | 임신 제 2,3삼분기 정밀 | 1 | 태아 성장 및 기형여부 진단, 양수량, 태반 이상 유무 진단 |
| **임신 20-35주** | 임신 제 2,3삼분기 일반 | 1 | 태아 성장 및 안녕, 양수량, 태반 이상 유무 확인 |
| **임신 36주 이후** | 임신 제 2,3삼분기 일반 | 1 | 태아 성장 및 안녕, 양수량, 태반 이상 유무, 태아 위치 확인 |

1. 임신 제1삼분기는 착상부터 임신 13주까지(13주 6일까지), 제2,3삼분기는 임신 14주(14주 0일)부터 출산 시까지 해당됨. (복지부 Q&A 20번)
2. 임신 11-13주에 NT를 측정하지 않고 일반 초음파만 본 경우 제 1삼분기 일반 초음파 제한 횟수(2회)를 초과한 경우 비급여, 초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고시 또는 Q&A에 없는 내용)

**2) 태아의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될 경우:** 횟수제한 초과하여도 추가 급여 (복지부 Q&A 1번)

1. 임신 과정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상기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삼분기의 일반 또는 일반의 제한적 초음파로 산정하며(주항 제외), 입원 중 동일 목적으로 1일 수회 시행하는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함. (고시 제 2016-175호)
2.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초음파를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음. 예를 들어 질출혈, 태동의 현저한 변화, 발열, 복통, 외상, 위해성 약물 노출, 조기진통, 태아 이상 등이 해당됨. (고시 또는 Q&A에 없는 내용)
3. 기형아 정밀계측 초음파 검사 후 F/U 검사하는 경우도 태아에게 이상이 있는 경우이므로 횟수제한 초과 일반 또는 일반의 제한적 초음파로 급여 산정 (고시 또는 Q&A에 없는 내용)
* 일반 초음파 확인 사항 모두 포함하여 태아 기형 F/U 하는 경우: 일반 초음파
* 해당 태아기형만 F/U 하는 경우: 일반의 제한적 초음파 (아래 ‘제한적 초음파’ 참조)
1. 단, 횟수제한 초과 초음파를 시행한 사유와 초음파 결과를 의무기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 (고시 또는 Q&A에 없는 내용)
2. 횟수제한 초과 일반초음파는 고위험 가산 적용 안 됨 (고시 또는 Q&A에 없는 내용)

**○ 제한적 초음파** (복지부 Q&A 4번)

**1) 치료 전·후와 같이 환자 상태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 초음파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산정**

**2) 해당검사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나943다 태아정밀 심초음파**

**1) 산전진찰 결과 태아의 심장에 이상소견이 있어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산정** (고시 제 2016-175호)

**2) 정밀 초음파(또는 기형아 정밀계측 초음파)에서 태아 심장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태아정밀 심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 두 초음파 각각 별도로 수가 산정 가능 (산부인과 또는 소아심장과 시행 여부 상관 없음) (고시 또는 Q&A에 없는 내용)

**○ 기형아 정밀계측 초음파** (주: 기형아(Anomaly)를 정밀 계측한 경우)

**1) 적용 범위:** 임산부 정밀 초음파로 태아정밀계측 실시 중 태아 기형이 확인되어 기형과 관련된 추가적인 계측을 시행한 경우, 또는 타 검사 등으로 기형 여부가 확진되어 기형아 정밀계측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 (복지부 Q&A 21번)

**2) 태아 기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 가능** (고시 또는 Q&A에 없는 내용)

1. 산모의 출산 전 선별검사의 이상소견: 태아 이상 선별을 위한 혈청 생화학적 검사, 태아목덜미투명대 검사, 태아 세포유리DNA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 등
2. 다태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결합쌍태아, 무심장 쌍태아, 태아간 수혈증후군, 태아간 20% 이상의 체중 차이가 있는 불균형 쌍태아, 일측태아사망, 단일양막성 쌍태아 등
3. 이상소견을 가진 태아: 주기형 (major anomaly) 및 부기형 (minor anomaly)이 있거나 다발성 기형인 경우
4. 양수검사, 융모막검사, 제대혈검사에서 염색체 이상이 확인된 경우
5. 원인 미상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 주기형: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생존이 가능하거나 심각한 형태의 이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부기형: 주기형을 제외한 나머지 기형,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기형은 아니라 육안적으로 이상이 보이는 경우 (예) lack of earlobe, middle 5th finger clinodactyly

\* 염색체 이상의 Minor or soft marker (nuchal fold thickness포함) 는 제외

**2) 임신 제 1삼분기 정밀 초음파 검사 중 우연히 태아 기형을 발견하여 정밀 계측을 한 경우:**

EB513 🡪 EB514 처방코드 변경 (고시 또는 Q&A에 없는 내용)

**3) 임신 제 2,3삼분기 정밀 초음파 검사 중 우연히 태아 기형을 발견하여 정밀 계측을 한 경우:**

EB517 🡪 EB518처방코드 변경 (고시 또는 Q&A에 없는 내용)

**4) 기형아 정밀 계측 초음파 검사 후 F/U 검사하는 경우:** 일반 초음파 확인 사항 모두 포함하여 태아 기형 F/U 하는 경우는 해당 삼분기의 일반 초음파, 해당 태아 기형만 F/U 하는 경우 해당 삼분기의 일반의 제한적 초음파로 산정 (고시 또는 Q&A에 없는 내용)

**○ 가산**

**1) 도플러 가산** (고시 제 2016-149호)

1. 10% 가산 (M-mode, color Doppler, power Doppler, pulse-wave Doppler 등 포함)
2. 단, 태아정밀 심초음파(Detailed Fetal Echocardiography)는 도플러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플러 가산 없음.

**2) 다태 임신 가산** (복지부 Q&A 22번)

1. 다태는 태아 수에 100%씩 가산, 즉 쌍둥이는 200%, 삼둥이는 300%
2. 태아 수에 따른 정확한 상병(완전코드)을 기재해야 함.

 - 2태아: 쌍둥이임신(O300)

 - 3태아: 세쌍둥이임신(O301)

 - 4태아: 네쌍둥이임신(O302)

 - 5태아 이상: 기타 다태임신(O308)

 - 상세불명의 다태임신(O309) 코드를 사용할 경우 사유 기재

**3) 고위험 가산:** 30% 가산, 임신 제 2,3삼분기 일반초음파에만 해당 (고시 제 2016-175호)

가)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산모의 질환상태(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고혈압 등)

나)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산모 자궁의 이상(여성생식기종양, 자궁경관무력증, 자궁기형 등)

다) 정상 분만이 불가능한 태반의 이상(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등)

라)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마) 자궁내 태아 성장지연

\* 횟수제한 초과 일반초음파는 고위험 가산 적용 안 됨 (고시 또는 Q&A에 없는 내용)

**○ 인접부위 초음파**

**1) 인접된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1.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고시 제 2016-175호)
2. 복지부 Q&A 32번 인접부위 기준에 (8) 나944라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951 임산부 초음파가 포함되어 있음
3. 임산부 초음파 검사 중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검사 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의 급여대상(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및 범위에 해당하면 급여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50% 청구 가능, 급여대상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성생식기 초음파는 비급여로 청구 (고시 또는 Q&A에 없는 내용)

|  |  |  |
| --- | --- | --- |
| 32 | 인접부위 기준 |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적용하며 인접 부위는 다음과 같음.- 다 음 -(1) 나941나(1)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나941나(2)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2) 나942가 유방·액와부 초음파/나942나 유방·액와부 제외한 흉부 초음파(3) 나944가(1)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나944가(2) 충수 초음파/나944가(3) 소장·대장 초음파/나944가(4) 서혜부 초음파/나944나(1) 신장·부신·방광 초음파/나944나(2) 신장·부신 초음파/나944나(3) 방광 초음파/나944다(1)‘주’ 전립선·정낭 초음파(경복부)(4) 나946가(1) 손가락·발가락(편측) 초음파/나946가(3) 손목관절·발목관절 초음파(5) 나948나(1) 경동맥 초음파/나948나(2) 기타 동맥 초음파(6) 나948다(1) 상지 동·정맥 초음파(7) 나948다(2) 하지 동·정맥 초음파(8) 나944라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951 임산부 초음파 |

**○ 비급여 초음파**

**1) 수술 중 초음파** (Intraoperative Ultrasonography) (복지부 Q&A 28번)

1.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초음파 검사를 의미함.
2. 수술 중에 문합부위 혈류 개통을 확인하는 간단한 행위부터 수술 중 지속적 모니터링하는 행위까지 포함됨
3. 다만, 심혈관조영실, 혈관조영실 등은 수술실이 아니므로 수술중 초음파가 아니며, 유도초음파 혹은 특수초음파로 산정함

**2) 분만기간 초음파** (Hospitalization Period Ultrasonography For Delivery) (복지부 Q&A 29번)

* 1. 분만을 위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초음파 검사를 모두 의미
	2. 분만을 위해 입원하여 퇴원 시까지 시행한 초음파, 진통 관련하여 시행하는 초음파, 출산 후 초음파 등
	3.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하여 분만하지 않고 퇴원하는 경우에는 횟수초과 급여초음파 청구 (해당 삼분기의 일반 또는 일반의 제한초음파 산정). 단, 1일 1회만 청구 가능함.

**3)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 생물리학 계수** (Biophysical Profile)

(고시 제 2016-149호)

|  |  |  |
| --- | --- | --- |
| **분류번호** | **코드(EDI)** | **명칭** |
|  |  | **[비급여]** |
|  |  | **제3절 기능 검사료**　 |
|  |  | **[생식, 임신 및 분만]**　 |
| **노-887** | EZ887 |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 생물리학 계수 Biophysical Profile |
|  |  | **제5절 초음파검사료** |
|  |  | **[유도 초음파]** |
| **노-985** | EZ985 | 수술 중 초음파 Intraoperative Ultrasonography |
| **노-986** | EZ986 | 분만기간 초음파 Hospitalization Period Ultrasonography For Delivery　 |

**○ 부인과 초음파**

**1)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만 급여 산정** (고시 제 2016-175호)

**2) 여성생식기 초음파 산정 방법** (복지부 Q&A 15, 16번)

1. 여성생식기 초음파는 여러 접근방법(경직장, 경질, 경회음부)으로 실시되는 검사를 반영한 수가로 접근방법을 불문하고 해당 검사 소정점수를 산정
2. **일반:** 해부학적 이상이 없이 기능적 문제가 있는 경우(단순 질 출혈)에 산정
3. **정밀:**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여성생식기 종괴, 여성생식기 기형, 종양)에 산정
4. **자궁내 생리식염수와 같이 약제를 검사 목적으로 주입한 경우:** 나944라(1)‘주’의 소정점수를 산정

**\* 4대 중증질환자: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실시한 경우 (횟수 제한 삭제)

나)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해당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1회 인정)

**○ 단순초음파**

**1)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만 급여 산정**

**2) 단순초음파(Ⅰ):** 진찰 시 보조 역할을 하는 초음파 (복지부 Q&A 5번)

 ① 수술 또는 시술 후 혈종 확인

 ② 종물 또는 종양 크기 확인

 ③ 수술부위 피부 위치 표시

 ④ 단순 잔뇨량 측정 등

**2) 단순초음파(Ⅱ)** (복지부 Q&A 5번)

 ① 분류된 진단초음파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초음파검사

② 처치·시술 진행 시 보조역할로 시행하는 초음파

**4) 산부인과 관련 단순초음파 종류**

|  |  |
| --- | --- |
| **분류** | **행위명** |
| 단순초음파(I)(One point) | 태아선진부태아심박동임신중절을 위한 처치 (라미나리아 삽입)자궁내막두께 |
| 단순초음파(II)(Simple) | 자궁경부탄성도자궁경부길이양수지수태아천자술/단락술 후 해당부위단일난포측정 |

**○ 유도초음파**

**1)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만 유도초음파 급여 산정** (고시 제 2016-175호)

**2) 산부인과 관련 유도초음파 종류** (복지부 Q&A 33번)

|  |  |  |
| --- | --- | --- |
| **분류** | **코드** | **행위명** |
| 유도초음파(I) | C8100 | 더글라스와천자 |
| C8111 | 양수천자\*  |
| C8112 |
| 유도초음파(II) | C8572 | 자궁내막조직생검-구획소파생검 |
| C8573 | 자궁내막조직생검-흡인생검 |
| C8574 | 자궁내막조직생검-단순소파생검 |
| C8575 | 자궁내막조직생검-자궁경내소파술 |
| R4028 | 자궁내풍선카테터충전술[자궁용적측정포함] |
| R4103 | 질식배농술-질벽혈종제거 |
| R4271 | 자궁내장치삽입술 |
| R4277 | 자궁내장치제거료(실이 보이지 않는 경우)-기타의 경우 |
| R4441 | 계류유산소파술-12주 미만 |
| R4442 | 계류유산소파술-12주 이상 |
| R4460 | 태아축소술 |
| R4521 | 자궁소파수술 |
| 유도초음파(III) | R4016 | 양막내양수주입술 |
| R4182 | 자궁내반증수술-용수정복 |
| R4435 | 난소낭종 또는 난소농양 배액술[질부접근] |

\* 양수과다증에서 양수감압술 등의 목적으로 양수천자하는 경우 해당. 유전학적 양수검사(태아염색체검사)는 비급여 대상 검사이므로 이에 시행하는 유도초음파도 비급여임) (복지부 Q&A 34번)

**○ 기타 초음파 수가** (고시 제 2016-149호, 고시 제 2016-17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류번호** | **코드(EDI)** | **명칭** | **점수(점)**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 |
| 　 |  | **[기본초음파]** |  |  |  |  |  |
| **나-940** |  | **단순초음파** |  |  |  |  |  |
|  | EB401 |  가. 단순초음파(Ⅰ) One Point Ultrasonography  | 130.01 | 11,454  | 11,076  | 11,538  | 11,999  |
|  | EB402 |  나. 단순초음파(Ⅱ) Simple Ultrasonography | 260.03 | 22,908  | 22,152  | 23,075  | 23,998  |
|  |  |  주: 제한적 초음파는 해당검사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  |  |  |
|  |  | **[진단초음파]** |  |  |  |  |  |
| **나-944** |  | **복부**  |  |  |  |  |  |
|  | 　 | **라. 여성생식기 초음파 Female Genital Ultrasonography** |  |  |  |  |  |
|  | EB455 | (1) 일반 General | 866.76 | 76,349  | 73,848  | 76,925  | 80,002 |
|  | EB456 | 주: 자궁내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1,108.73점을 산정한다. | 1,108.73 | 97,670  | 94,464  | 98,400  | 102,336 |
|  | EB457 | (2) 정밀 Detailed | 1,270.03 | 111,872  | 108,204  | 112,713  | 117,221 |
|  |  | **[유도초음파]** |  |  |  |  |  |
| **나-956** |  | **유도초음파 Guiding Ultrasonography For Procedure** |  |  |  |  |  |
|  | EB561 |  가. 유도초음파(Ⅰ) - 흉막천자, 심낭천자, 양수천자, 더글라스와 천자, 배액 시 시술부위 확인 | 443.90 | 39,100  | 37,824  | 39,400  | 40,976  |
|  | EB562 |  나. 유도초음파(Ⅱ)- 조직생검, 세침흡인, 시술 시 간헐적 유도 | 887.80 | 78,212  | 75,636  | 78,788  | 81,939  |
|  | EB563 |  다. 유도초음파(Ⅲ)- 시술 시 지속적 모니터링 | 1,065.36 | 93,852  | 90,768  | 94,550  | 98,332  |
|  | EB564 |  라. 유도초음파(Ⅳ)- 고주파 열치료술, 냉동치료술과 같은 고난이도 시술 | 2,663.40 | 234,623  | 226,920  | 236,375  | 245,830  |